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 KBS전주청주제1UHDTV방송국 및 팔달서대문FM라디오 등 4~5년으로 재허가 -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완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올 3월과 6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결과 총점 700점 이상인 KBS전주·청주 제1UHDTV방송국, 팔달·서대문 FM공동체라디오 등 6개 방송사 8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부산·제주MBC지상파DMB방송국과 OBS경인FM 방송국 등 5개사 5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재허가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 결과와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방송법」의 취지를 반영해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조건(부관)을 각 방송사업자에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부관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지상파·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조건(부관)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석 (02-2110-1450)
		담당자	사무관	이용원 (02-2110-1417)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기훈 (02-2110-1420)
		담당자	사무관	사공영은 (02-2110-1421)

□ 재허가 대상 방송국별 총점 및 허가유효기간
- 700점 이상 : 재허가(5년)

연번	방송사업자	방송국	총 점	허가유효기간
1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1UHDTV방송국	836.21	2030.12.31.
2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1UHDTV방송국	834.91	2030.12.31.
3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	팔달FM공동체라디오	777.34	2031.06.30.
4	한국방송공사	KBS지역지상파DMB방송국	742.89	2030.12.31.
5	(사)서대문공동체라디오	서대문FM공동체라디오	722.66	2031.06.30.
6	(주)티제이비	TJB지상파DMB방송국	718.93	2030.12.31.
7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지상파DMB방송국	718.38	2030.12.31.
8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지상파DMB방송국	701.96	2030.12.31.

- 650점 이상 ~ 700점 미만 : 재허가(4년)

연번	방송사업자	방송국	총 점	허가유효기간
1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지상파DMB방송국	698.42	2029.12.31.
2	(사)남해에프엠공동체라디오	남해FM공동체라디오	697.66	2029.12.31.
3	제주문화방송(주)	제주MBC지상파DMB방송국	690.76	2029.12.31.
4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OBS경인FM방송국	690.30	2030.06.30.
5	춘천문화방송(주)	춘천MBC지상파DMB방송국	687.97	2029.12.31.

구분	대상	재허가 조건(부관)
지상파 방송사업자	전체 (UHD, 라디오, DMB)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KBS(UHD)	○ 개정 방송법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2026년 9월말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2개월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개정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2026년 9월말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2개월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개정 방송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의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할 것.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2026년 9월말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2개월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OBS(라디오)	○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자금조달 및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장애인, 어린이, 노인, 다문화 등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 확대를 위한 연도별 세부 이행계획을 재허가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DMB(전체)	○ 재허가 시 제출한 DMB서비스에 대한 방송시설 투자·유지 보수 계획 및 난시청 해소 방안을 준수하고, 그 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DMB(KBS)	○ 시청권 보호를 위해 고화질 채널과 동시 송출 중인 저화질(SD급) 채널의 동시 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송출을 중단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할 것
	전체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금지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